

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8-14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5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7조(재정 지원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(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)에 따라
- 안산시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택시쉼터의 목적, 설치, 시설을 정함.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쉼터의 이용제한을 정함.(안 제4조)
- 쉼터의 직접운영,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정함.(안 제5조)
- 수탁자에 대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6조)

□ 조례안 : 붙임1

□ 조문대비표 : 붙임2(입법예고 결과반영)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4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있음(1건-일부반영)

- 입법예고 : 2019. 2. 12. ~ 2019. 3. 5. (21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붙임

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택시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칭: 안산시 택시쉼터

2. 소재지: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4-7

제3조(시설) ① 쉼터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.

1. 휴게실, 샤워실, 수면실

2. 주차장 등 부대시설

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외에도 쉼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이용제한) ① 이용자는 해당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음주, 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

2.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

3. 상업적·정치적·종교적 행위

4.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설치목적에 적합한 안산시 소재 비영리 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정절차·방법 및 의무, 위탁기간, 위탁운영경비 보조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

공무원에게 지도·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·감독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,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대중교통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대중교통과장 임 재 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택시팀장 이 상 배 (행정 2954)

<불임 2>

입법예고 결과반영 조문 대비표

당초 조례안	입법예고 결과반영 조례안
안산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안산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<u>명칭 및 소재지</u>) 안산시 택시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 1. 명칭: 안산시 택시쉼터 2. 소재지: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4-7	제2조(<u>설치</u>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택시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명칭: 안산시 택시쉼터 2. 소재지: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4-7
<u>〈신설〉</u> 제5조(<u>이용의 제한</u>)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 1.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	제3조(<u>시설</u>) ① 쉼터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. 1. 휴게실, 샤워실, 수면실 2. 주차장 등 부대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외에도 쉼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.
제4조(<u>이용제한</u>) ① 이용자는 해당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1. 음주, 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.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. 상업적 · 정치적 · 종교적 행위	

당초 조례안	입법예고 결과반영 조례안
<p>2.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</p> <p>3.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<u>아니하는</u> 행위</p> <p><u>제3조(위탁관리 및 운영)</u> ① <u>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<u>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</u>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수탁자의 선정절차, 방법,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② 시장은 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제4조(지도 · 감독)</u>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· 감독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,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6조(준용)</u>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 <p><u>제7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 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4.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5조(위탁운영)</u> ① <u>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설치목적에 적합한 안산시 소재 비영리법인 ·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정절차 · 방법 및 의무, 위탁기간, 위탁운영경비 보조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 <p><u>제6조(지도 · 감독)</u> ① <u>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 ·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 · 감독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,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</u></p> <p>〈삭제〉</p> <p><u>제7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 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